

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재산관리인	성명	주민등록번호
	직업	전화번호
	주소	

북한주민	성명	성별
	생년월일	직업
	주소	

위 재산관리인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.

조치할 내용

이유	기한
----	----

사전 통지	[] 사전 통지함
	[] 생략함 (사유:)

「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합니다.
(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)

년 월 일

법무부장관 직인